

(제6-1호)

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

1. 당기순이익 변동내용(단위 : 천원)	당해사업연도	직전사업연도	증감금액	증감비율(%)
- 당기순이익	38,552,697	22,963,166	15,589,531	67.9
2. 재무현황(단위 : 천원)				
- 자산총계	4,350,405,637	3,684,356,468	666,049,169	18.1
- 부채총계	3,821,498,493	3,307,593,138	513,905,355	15.5
- 자본총계	528,907,144	376,763,330	152,143,814	40.4
- 자본금	220,999,000	220,999,000	0	0
- 자본총계/자본금 비율(%)	41.8	58.7		
3. 당기순이익 변동 주요원인	2017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중구로부터 취득세, 가산세 및 경과이자 105,910백만원을 환급 받아, 이 중 27,076백만원(가산세 및 경과이자)을 영업외이익으로 인식함.			
4. 기타 투자파단에 참고할 사항	-			

[작성요령]

- 주1)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손익 항목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이상 증가 또는 감소(손익계정의 흑자전환 또는 적자전환 포함)한 사실의 확인 또는 결정이 있을 때
- 주2) "증감금액"은 당해계정의 당해사업연도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부호를 함께 기재
- 주3) "증감비율"은 「(증감금액 ÷ 직전사업연도금액) × 100」의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, 감소의 경우 負(-)표시를 하여 기재(단, 손익구조 변경이 흑·적자 전환일 경우 비율을 적지 아니하고, "흑자전환 또는 적자전환"이라고만 기재)